



산업통상자원부



한국에너지공단

이번 겨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을 준수해 주십시오!

근거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(산업부 공고 제2022-766호)

대상 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

일시 '22.10.18(화) ~ '23.3.31(금)

1 난방온도를 17도 이하로 유지합니다.

※ 학교, 도서관, 의료시설, 아동·노인복지시설, 대중교통시설, 문화체육시설 등 적정온도를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불편 최소화

2 권역별로 순차운휴 시간대에는 난방기 가동을 중지합니다.

<권역별 순차운휴 시간대(09:00~10:00, 16:00~17:00) >

경기·세종 권역	서울·인천·강원 권역	경상·제주 권역	충청·전라 권역
09:00~09:30	09:30~10:00	16:00~16:30	16:30~17:00

※ (경상)부산·대구·울산·경남·경북, (충청)대전·충북·충남 (전라)광주·전남·전북

3 업무시간(09:00~18:00)에는 개인난방기 사용을 금지합니다.

※ 임산부, 장애인 등은 기관장의 승인 후 대상 제외 가능

4 광고·장식조명은 심야시간(23:00~익일 일출시)에 소등합니다. 옥외 체육공간에 설치된 조명타워의 점등을 금지합니다.

※ (광고장식조명) 대중교통시설, 소방기관, 언론기관, 약국, 의료기관, 치안기관 등 공익을 위한 시설, 지자체장 및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

※ (옥외체육공간 조명) 민간 개방 공간, 공공기관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기관과 협의하여 승인된 경우 제외

5 업무시간에는 실내조명 30% 이상, 전력피크시간에는 50% 이상 소등합니다.

※ (업무시간) 09:00~18:00, (전력피크시간) 09:00~10:00, 16:00~17:00



에너지사용제한 공고에 따라 위의 5대 제한 행위 위반 시에는

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*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제4항(과태료)*

(최초)시정권고 → (1회)150만원 → (2회)200만원 → (3회)250만원 → (4회)300만원

